

■ 법률 칼럼

# 종교이민 vs. 취업 2순위 (종합)

종교이민의 경우는 청원서(I-360)와 영주권 신청서(I-485)를 동시에 접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민서비스국(USCIS)에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 청원서가 승인된 이후에 영주권 신청서를 이민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최근 I-360 승인이 거의 2년 가까이 걸리고 있어서 취업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방법을 많은 목사님들이 선택하고 계십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먼저 종교이민과 취업 2순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칼럼에서 2순위로 교회의 스폰서를 받아 영주권을 신청하실 때 주의점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1. 종교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한 조건

1) 종교이민 영주권 신청자는 같은 교단의 일원이어야 하고 최소한 2년 이상 그 교단을 위해 사역해 왔어야 합니다. 종교비자(R-1) 신청자는 지난 2년간 사역자이든 평신도이든 상관없이 그 교단의 일원이었으면 되지만, 종교이민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그 교단의 일원일뿐만 아니라 지난 2년간 종교직 종사자로서 풀타임으로 사역해 왔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 2년 동안의 사역이 유급이었으며 또 중간에 중단없이 지속적으로 수행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2) 종교이민 영주권 신청자가 종교 단체에서 담당할 직무가 종교 단체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어야 합니다. 종교이민 영주권 신청 시 해당 직무에 대한 USCIS의 심사 기준은 그 일이 종교 단체에서 과연 필요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USCIS은 종교이민 영주권을 신청한 사람이 맡게 될 직무, 경력, 해당 종교 단체에서 사역비를 받는 사람의 수, 교회의 규모, 그리고 교회의 최근 변화 기록 등을 자세히 검토 합니다.

3) 신청자는 그 직무에 적합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종교비자에서와 같이 신청자는 해당 종교적인 직무를 수행할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신청자는 그것을 증명할 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교단은 종교적이고, 비영리 면세단체이며, 종교직 종사자에게 보수를 줄 능력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종교비자 신청에서와 같이 종교이민 영주권 신청자는 교단, 행할 직무, 그리고 신청자의 신상자료를 USCIS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종교이민으로 영주권을 후원하는 종교

단체는 신청자에게 약속한 사역비를 지불할 능력이 있음을 반드시 보여주어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여러 조건과 구비 서류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최근 USCIS은 종교이민으로 영주권을 심사할 때 종교 단체의 재정에 관하여 까다로운 추가 서류를 종종 요구합니다.

### 2. 교회의 취업 2순위

많은 분들이 종교직 종사자로 봉사할 때 반드시 종교 이민을 통해서만 영주권을 해결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직 종사자라고 해서 반드시 종교이민 영주권만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종교 단체도 사실상 고용주이기 때문에 일반취업이민 절차를 거쳐 취업 영주권을 스폰서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들께 대부분 신학석사 학위를 소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흔히 취업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을 하시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3순위 취업이민 달리 영주권 번호의 오픈과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취업이민 2순위의 경우는 청원서와 영주권 신청서의 동시 접수가 가능합니다. 1단계인 노동 승인(Labor Certificate)이 통과되면 2번째 단계에 이민 청원(I-140)과 영주권 신청서 동시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물론 취업 3순위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종교 단체가 일반 고용주로서 일반 취업 영주권을 스폰서할 경우에 이민국은 종교 단체도 일반 고용주와 똑같은 기준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노동청에서 책정하는 평균 임금(Prevailing Wage)을 지불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을 종교 단체가 가지고 있는지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정확하게 현재 교회의 재정상태를 보여줄 수 있는 재정보고서(Financial Statement)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민국의 최근 경향이 IRS의 공식 서류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면세기관으로 납세의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민국에 재정상태를 보고하는 Form 990의 형태로 재정 서류를 준비해 두고 취업이민을 시작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천권우 변호사

● LA Office: (213) 232-1655  
● OC Office: (714) 522-5220

매주 첫째주 월요일 라디오 코리아 이민상담 진행



### 우리 동네 걷기 좋은 곳

## Etiwanda Falls-Rancho Cucamonga



이 트레일은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나서 트레일 헤드부터 폭포 도착 전까지 나무 한 그루 없는 맹벌레 걸어야 한다. 따라서 뜨거운 한낮은 피하고 가능하면 이른 아침이나 오후 서너 시에 출발해서 해질 무렵 내려오기를 권한다. 올라가다가 뒤를 돌아보면 시야가 탁 트여 도시들이 넓게 펼쳐진 모습을 즐길 수 있으면 내려올 때는 석양을 즐길 수 있다. 인근 주민들이 아침저녁 산책길로 많이 애용하기 때문에 오르내리는 사람들이 비교적 많은 편이다.

트레일 헤드부터 계속해서 오르막 길이기 때문에 급히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걸으며 가끔 쉬어 가기 바란다. 오던 길을 내려다보면 넓게 펼쳐진 도시 풍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이 트레일을 가기 전에 폭포가 주는 상상으로 지나친 기대를 해서는 곤란하다. 한국 사람들이 그리는 고국의 산처럼 계곡에 물이 흐르고 녹음이 우거진 숲을 상상한다면 첫발자국을 찍는 순간부터 후회막급일 것이다. 그냥 오르막 산길을 걸어 올라가면 갑자기 눈앞에 오아시스가 나타난다고 생각하면 된다. 삭막한 흙길의 끝에 잠시 커다란 나무들이 솟아 있어 녹색의 그늘이 만들어 놓은 숲을 만나게 되고 그 속에 물이 흐르고 작은 폭포가 기다리고 있다. 땀 흘려 오르막을

올라가서 시원한 나무그늘에 덮인 숲속의 흐르는 물에 손이나 발을 담그고 잠시 즐기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한다. 왕복 3마일 정도 되며 초보자들도 즐길 수 있다.

■ 가는 길: LA에서 CA-210 Fwy 동쪽 방향으로 가다가 Rancho Cucamonga시의 Day Creek Blvd에서 내려 좌회전해서 산쪽으로 오르다가 Etiwanda Ave를 만나면 다시 또 좌회전 끝까지 올라가면 주차장(트레일 헤드)이 나온다. 주차장에서 산 쪽으로 계속 오르면 된다. 가다가 왼쪽으로 갈림길이 몇 차례 나오지만 한눈 팔 필요는 없다. 계속 산을 향해 오르다 보면 그 끝에 작은 오아시스가 나오고 폭포가 기다리고 있다.

■ 오전 6:30 오픈해서 겨울은 오후 5:00까지, 여름은 오후 8:00까지

■ 트레일 헤드 주소  
4890 Etiwanda Ave  
Rancho Cucamonga, CA 91739



▲ Etiwanda 폭포. 사진=타운뉴스



# Kim's Handyman 리모델링전문



페인트/ 부엌  
화장실/ 마루  
타일/ 캐비닛  
윈도우/ 지붕수리  
전기/ 플러밍  
각종 리모델링

작은일도 합니다!

**Kim's Handyman**  
562.833.0766



## Home Remodeling